

수원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18가단556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수경, 김현승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16,75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6.부터 2021.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E 전 2,393㎡ 중 1/2 지분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30946호로 마친 2017.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49,822,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2017. 9.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G(1998. 11. 7. 사망) 슬하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G 사망 후 2001. 1. 11. 망인과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3. 망인 소유이던 화성시 E 전 2,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이 2017. 9. 28. 사망하자 피고와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라. 피고는 2017. 12. 18.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명의로 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3094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한우 36두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H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I에게 2017. 12. 4. 18,144,000원, 2017. 12. 22. 17,742,400원, 2018. 1. 3. 10,000,000원, 2018. 1. 30. 22,232,500원 합계 68,118,900원 상당의 벼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른 용도로 원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를 한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지분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2. 9.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서에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 A, B은 망인의 사망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자신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과 함께, 당시 군복무 중이던 원고 C의 인감증명서를 위 원고의 승낙 없이 대신 발급받아 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B, C는 각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원고 A은 피고가 그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 외에도 화성시 J 토지, K 토지, L 토지 등이 존재하나, 이 사건 토지는 망인과 피고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부지로서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만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2017. 9. 28.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증여받은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갑 제2호증을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이 사육하던 한우 36두를 망인 사망 후인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 98,0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망인이 경작하던 벼를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 68,118,9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위 한우 및 벼의 매각대금 합계 166,118,900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6,888,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 소유이던 한우 26두와 위 한우들을 사육하던 농장에서 망인 사망 이후 출생한 한우 10두 합계 36두를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합계 90,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망인과 함께 경작한 벼를 피고와 망인을 출하자로 하여 매각하여 오다가, 망인 사망 이후인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출하자로 하여 벼를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합계 68,118,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바(민법 제262조 제2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망인은 경작한 벼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위 한우 36두 매각대금과 벼 매각대금의 1/2 상당액 합계 124,059,450원[= 90,000,000원 + 34,059,450원(= 68,118,900원 × 1/2)]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7,568,766원(= 124,059,45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 출생한 한우 10두는 피고의 소유이고, 나머지 26두만이 망인의 소유이며, 위 한우 26두의 매각대금은 6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이후 출생한 한우 10두는 망인 소유이던 한우 26두를 사육하던 농장에서 위 한우들로부터 출생한 송아지들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다.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7. 6. 19. 망인 소유인 화성시 J 답 1,886㎡, K 답 1,889㎡, L 답 840㎡를 담보로 하여 M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18. 3. 20. 위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원고들 각 2/9 지분, 피고 3/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M조합이 담보권을 실행하자 원고들은 2019. 12. 2. 망인의 M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116,247,555원(= 59,613,505원 + 43,048,469원 + 2,900,270원 + 10,685,311원)을 변제하고 155,000원을 지출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원고들이 변제하거나 지출한 망인의 대출원리금 및 담보해지비용 합계 116,402,555원(= 116,247,555원 + 155,000원) 중 피고의 상속분 상당액인 38,800,851원(= 116,402,555원 × 3/9) 중 각 12,933,617원(= 38,800,851원 × 1/3) 중 원고들이 구하는 각 12,933,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금 27,568,766원과 구상금

12,933,587원을 합한 40,502,353원(= 27,568,766원 + 12,933,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 사망 후에 망인의 채무 총 121,070,708원¹⁾ (= 사료대금 채무와 한우 사육 부지의 차임 채무 합계 33,819,345원 + 농약대금 채무 합계 20,703,552원 + 주유대금 채무 합계 16,250,000원 + 망인 명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 합계 10,321,665원 + M조합 대출이자 채무 합계 5,976,146원 + 피고의 모친 N에 대한 차용금 채무 34,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우와 벼 매각대금 합계 99,059,450원(= 65,000,000원 + 34,059,450원)에서 위 소극재산 121,070,708원을 빼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회복으로써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즉,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은 합계 63,731,947원(= 자동차 보험료 및 세금 합계 12,932,820원 + 농어촌공사 분할 할부금 합계 7,057,690원 + 지게차 대금 3,000,000원 + 농기계 보험료 276,760원 + 농기계 대금 6,854,677원 + 원고 B 명의로 이전한 망인 소유 농기계 7대의 가액 중 피고 상속분 상당액 33,61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원고들은 각 합계 7,190,814원[= 32,358,666원(=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 등 15,500,000원 +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비용 및 등기비용 합계 10,192,000원 + 피고가 2017. 12. 27. 인수한 망인의 대출금 채무 30,0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인 각 6,666,666원) × 2/9]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각 부담한다.

나. 판단

1) 망인의 상속채무의 공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 사망 후에, ① 사료대금 채무와 한우 사육 부지의 차임 채무 합계 33,889,345원(= 2017. 10. 11. 1,000,000원 + 2017. 10. 24. 1,304,600원 + 2017. 10. 27. 25,000,000원 + 2018. 1. 23. 395,004원 + 2018. 2. 21. 605,012원 + 2018. 4. 25. 2,797,748원 + 2018. 5. 8. 868,891원 + 2018. 5. 29. 177,900원 + 2018. 8. 24. 1,740,190원), ② 농약대금 채무 합계 20,703,552원(= 2017. 11. 1. 229,900원 + 2018. 1. 29. 18,529,652원 + 2018. 11. 27. 1,944,000원), ③ 주유대금 채무 합계 16,250,000원(2017. 9. 27. 2,000,000원 + 2017. 11. 13. 1,000,000원 + 2017. 11. 21. 2,300,000원 + 2017. 12. 30. 2,550,000원 + 2018. 7. 2. 1,400,000원 + 2018. 4. 27. 6,000,000원 + 2018. 4. 27. 1,000,000원), ④ 망인 명의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 합계 10,321,665원(= 2017. 12. 12. 320,000원 + 2018. 1. 4. 21,988원 + 2018. 1. 10. 20,447원 + 2018. 1. 10. 9,959,230원) 총 81,164,562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한 망인의 상속채무 합계 81,164,562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인 각 18,036,569원(= 81,164,562원 × 2/9)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구상금채권 합계액(각 40,502,353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망인이 피고의 모친 N에 대하여 34,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M조합에 대한 대출이자 채무 합계 5,976,146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2개의 M조합 계좌에서 2017.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20여 회에 걸쳐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5,976,146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10. 4. 5. M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망인 소유인 화성시 O 답 1,986㎡ 및 P 답 2,911㎡에 관하여 M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0. 9. 1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29,000,000원으로 변경한 점, 망인은 2013. 12. 23. 피고에게 위 O 토지와 P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각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7. 12. 27. 망인의 M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O 토지와 P 토지 등을 담보로 한 자신의 M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채무로서 M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B를 대신하여 자동차 보험료 및 세금 합계 12,932,820원, 농어촌공사 분할 할부금 합계 7,057,690원, 지게차 대금 3,000,000원, 농기계 보험료 276,760원, 농기계 대금 6,854,677원 총 30,121,947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 등 15,500,000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비용 및 등기비용 합계 10,192,000원 총 25,69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원고 B은 총 30,121,947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각 5,709,333원($= 25,692,000원 \times 2/9$)의 이익을 얻었으며, 각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35,831,280원($= 30,121,947원 + 5,709,333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 A, C에 대하여 각 5,709,333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 명의로 이전한 망인 소유 농기계 7대의 가액 중 피고 상속분 상당액인 33,61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2017. 12. 27. 인수한 망인의 대출금 채무 30,0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인 각 6,666,66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 명의로 이전된 망인 소유 농기계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인수하였다는 망인의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망인이 M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27,568,76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각 12,933,587원의 구상금채권을 합한 각 40,502,353원의 채권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망인의 상속채무 각 18,036,569원이 원고들의 위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위 각 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원고 B에 대하여 35,831,280원, 원고 A, C에 대하여 각 5,709,333원)은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2019. 12. 2. 상계적상에 있는바, 위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16,756,451원(= 40,502,353원 - 18,036,569원 - 5,709,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망인의 상속채무 중 원고 B의 몫을 공제하고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고 나면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16,756,451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선우

1) 피고는 이 사건 2019. 4. 8.자 준비서면에서 위 5가지 채무를 열거하면서 피고가 망인의 채무 총

“104,420,8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총액의 기재는 계산상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택한다.